

대명률직해 이두의 표기법

고 정 의

1. 태조 4년(1395)에 간행된 대명률직해(이하 直解라 약칭한다)는 고려시대의 이두체계를 집대성하여 보여주는 이두자료로 현존 자료 중 가장 풍부한 어휘형태 및 문법형태를 보여주는 이두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이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해석은 이두의 체계를 수립하고 전·후대 이두와의 차이점을 구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기 중세국어 내지 고대국어의 해명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대명률직해의 이두에 대한 중요한 연구 업적으로는 中樞院(1936), 강성일(1966), 김태균(1968), 박희숙(1985), 안병희(1985), 고정의(1992), 한상인(1993) 등을 들 수 있다. 강성일(1966)은 교정본을 저본으로 直解의 이두어휘를 형태별, 자획순으로 분류하고 권수와 빈도수를 밝힌 것으로 연구를 위한 기초적 작업이다. 이 색인은 대상이 부사와 조사, 어미 등의 문법형태에 한정되고 있다. 김태균(1968)은 총 109자의 이두자를 한글자모순으로 배열하고 어휘와 예문 그리고 주를 붙이고 기술한 것이고 김태균(1971a)은 直解의 이두를 형태별로 분류한 것이다. 박희숙(1985)은 直解의 이두에 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로 서지적 고찰과 함께 直解에 실린 모든 어휘자료를 형태별로 분류하고 이를 분석 정리한 것이다. 고정의(1992)와 한상인(1993)도 이와 비슷한 연구이나 다른 연구에서와 달리 고정의(1992)에서는 표기법에 대한 논의가 보인다. 이러한 표기법과 관련된 문제는 안병희(1985)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와같이 直解에 대한 연구는 형태 중심으로 이루어져 표기법에 대한 논의로는 안병희(1985)와 고정의(1992)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直解의 표기

법을 문자체계와 표기법의 특징 두 면에서 이왕의 논의를 보완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2.0. 문자체계

표기법은 문자체계와 그 운용법칙으로 크게 나뉜다. 차자표기법의 문자체계는 한자의 음과 훈을 바탕으로 차용되고 여기에 표의성과 표음성이 혼합되어 이루어지는 체계이므로 한자의 문자 체계에 의지하게 되지만 차용의 과정에서 차자표기법 고유의 문자 체계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한자의 뜻을 살려 이용하는 ‘讀’의 원리와 뜻은 버리고 음만을 살려 표음자로만 이용하는 ‘假’의 원리에 의하여 음독자, 음가자, 훈독자, 훈가자로 구분된다(남풍현 1981: 11-18). 直解의 이두를 위의 용자법에 따라 분류하면 그 빈도는 대체로 훈독자, 음가자, 음독자, 훈가자의 순이 된다. 直解에는 부사, 조사, 어미 등에 쓰인 이두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명사, 동사 등에 쓰인 이두를 합하면 상당히 방대한 양이 된다.¹⁾ 그러나 이들 차자들 가운데에는 이두와 한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있으므로 이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直解에 쓰인 이두의 숫자는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두어로 파악되는 모든 이두자의 문자체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분명히 이두로 다루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두형태의 표기에 차용된 이두자만을 대상으로 이를 ‘讀·假’의 체계별로 분류한다. 이들 차자 중에는 한 글자가 차용 원리에 따라 讀字와 假字의 둘로 분류된 것도 있다. 이로써 直解에 사용된 이두자들의 차자체계별 분포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佳叱, 簡略亦, 强亦, 更良, 去, 去乃, 去等, 去有, 件記, 見, 遣, 庫, 故只, 昆, 工匠, 串, 戈只, 果, 科科以, 教, 橋, 及, 其, 岐等如, 己只, 甥, 乃, 能亦, 段, 當爲, 大母, 大父, 德應, 導良, 斗尺, 等, 良, 良不, 良沙, 良音可, 良中, 良只, 良置, 令是, 馬兒, 望, 弥, 赫, 明白亦, 貌, 貌如, 蒙白爲, 無, 無亦, 茂火, 聞, 物物以, 反亦, 白, 白侏, 凡矣, 犯斤, 犯近, 別

1) 대명률칙해의 이두 색인에 대하여는 강성일(1966)과 고정익(1992)를 참조할 것.

爲, 別乎, 并以, 並以, 並只, 并只, 卜定, 捧上, 逢音, 不冬, 不得, 不喻, 分, 事, 使內, 使內行, 斜是, 沙, 沙工, 私亦, 私音丁, 舍主, 山獵, 山枝, 上下, 先可, 先亦, 少爲, 所, 率良, 收, 水梁, 隨, 隨乎, 須只, 始叱, 是, 式, 新丁, 身乎, 牙人, 安徐, 鑰金, 如, 如可, 如中, 餘良, 亦, 亦中, 吾, 臥, 要, 用良, 又, 右, 右如, 云, 爲等如, 爲是, 爲行, 唯只, 有, 猶亦, 遺, 隱, 乙, 乙良, 依良, 擬只, 矣, 以, 易亦, 而亦, 耳亦, 弋只, 因于, 因乎, 入, 仍于, 子細, 自矣, 自以, 自中, 作文, 在, 在乃, 才人, 這這, 的是, 第, 除, 除除, 齊, 曾只, 之次, 只, 只爲, 持是, 持音, 知, 知想只, 知想是, 知乎, 至亦, 直亦, 進, 進去, 進叱, 叱, 叱段, 叱分, 次, 次第, 次知, 此, 尺文, 初亦, 草枝, 推, 追于, 趣便以, 置, 親亦, 稱下, 他, 止下, 退是, 便亦, 必于, 向事, 向爲, 向入, 向前, 乎, 乎爲, 爻周, 休.

2.1. 음독자

簡(간):簡略亦(간략히), 干(간):鹽干(염간), 干事人(간사인), 强(강):强亦(강히), 工(공):工匠(공장), 記(기):件記(빠기), 甥(남):甥(남), 能(능):能亦(능히), 當(당):當爲(당히-), 定(정):卜定(지정), 第(제):次第(차례), 略(략):簡略亦(간략히), 明(명):明白亦(명백히), 蒙(몽):蒙白爲(몽백히-), 文(문):作文(질문), 尺文(자문), 白(백):明白亦(명백히), 別(별):別乎(별은), 牙(아):牙人(아인), 樣(양):樣(양), 人(인):才人(재인), 上(자):上下(차하), 匠(장):工匠(공장), 才(재):才人(재인), 前(전):向前(아전), 周(주):爻周(효주)²⁾, 之(지):之次(지차), 知(지):次知(차지), 次(차):次第(차례), 之次(지차), 次知(차지)³⁾, 初(초):初亦(초여), 趣(취):趣便以(취변으로)⁴⁾, 親(친):親亦(친히), 稱(칭):稱下(칭하), 止(탈):止下(탈하), 便(편):趣便以(취변으로), 下(하):止下(탈하). 稱下, 向(향):向爲

2) ‘爻周’를 ‘쇼주’(羅麗, 吏集, 略解), ‘효주’(略解)로 읽는 것은 이를 음독한 것이다. 한편 語錄辨證說에서 이를 ‘엇더리’로 읽는 것은 이를 동사 ‘에우-’(抹)와 ‘덜-’(除)의 복합어로 읽는 것이다(李丞宰 1989:88). 따라서 이를 ‘엇더리’로 읽는다면 이는 혼독자가 된다.

3) ‘次知’는 차지(羅麗), 차지(吏集)로 음독하고 있다. 이를 혼독한다면 ‘그솨마리’로 읽을 수 있다(안병희 1977:10).

4) 이 독음은 이두약해의 독법에 따른 것임.

2.2. 혼독자

可(-口직):音可(-口직), 更(가식-):更良(가식아), 去(가-):進去(나아가-), 件(불):件記(불귀), 見(보-):見(보-), 考(다딤):白考(숭다딤), 庫(긔):庫(긔), 故(짐죽):故只(짐죽)⁵⁾, 申(긔):申(긔), 科(차/츄):科科以(츄츄로)⁶⁾, 教(是)(시):教(是)(-시-), 橋(드리):橋(드리), 金(쇠):鎗金(즈몹쇠), 及(밋):及(밋), 其(저):其矣(저의), 岐(굴히-):岐等如(가로드러)⁷⁾, 巴只(드록):巴只(-드록), 大(한):大父(한아비), 大母(한어미), 導(드되-):導良(드되아), 斗(말):斗尺(말자), 得(실):不得(모질), 等(돌):等(돌), 令(시기-):令是(시기), 馬(몰):馬兒(무아지), 望(브라-):望良(브라), 貌(죽):貌如(죽다이), 母(어미):大母(한어미), 無(없-):無乎(업스온)⁸⁾, 無亦(업시), 聞(듣-):聞(듣-), 物(갓):物物(以)⁹⁾, 反(도르-):反亦(도르혀), 白(숭-):白(숭(숭다딤)), 白(숭):白(-숭-), 凡(물릿):凡矣(물릿), 並(아올-, 다뭏-):並以(아올오). 並只(다바), 卜(지):卜定(지뎡), 捧(받-):捧上(받자), 逢(맞-):逢音(마좁), 父(아비):大父(한아비), 不(안, 모):不冬(안따). 不諭(안디), 事(일):事(일), 使(브리-):使內(브리-), 斜(빗기-):斜是(빗기-), 私(아름):私亦/私音

-
- 5) '故只'는 '짐죽'으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 '故'는 훈이 '짐죽'이므로 이를 '짐죽'으로 읽으면 '只'는 발음 '시'의 첨기가 되는데 '只'는 '기' 또는 '기'의 음가자로 차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짐죽' (裴大溫 1988:91)으로 읽을 수도 있다. 문헌상 용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비릿'의 차자 '始叱'과 '始只'(吏文, 吏便)의 공존으로 보아 '짐죽'의 차자도 *故叱과 '故只'가 함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공존의 가능성과 '故'의 훈 '짐죽' 그리고 '짐죽'과 '짐죽'의 문헌상의 등장 시기를 고려하여 '짐죽'으로 읽는다.
 - 6) '科科'는 '차차'(吏集), '츄츄'(吏文)로 읽고 있는데 이것은 '以'를 제외한 '科科'만을 이두로 읽은 것이다. '科科'를 '츄츄/차차'로 읽는다면 '科科'는 '차차로' 또는 '츄츄로'로 읽어야 된다. 金泰均(1968:45)는 이를 어원미상으로 보고 '츄츄로'로 읽은 바 있고 朴喜淑(1985:134)는 '科科'의 의미를 '무더기무더기' 곧 '條目條目'으로 보고 이 '條'의 古音 't'ian(M)'에서 '츄츄, 차차'를 빌어 온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는 '科'의 음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혼독자로 분류하여 둔다.
 - 7) '岐等如'는 '가로드러'(吏便), '가로드려'(吏集), '가르트리'(吏文), '가로러'(儒必) 등으로 읽고 있다. '岐'는 '굴히'로 혼독자이고 '等'은 '돌/들'로 읽히는 훈가자이다. 그리고 '如'는 '여'를 표기한 음가자이다.
 - 8) '無乎事'의 독법 '업스온일'(儒必), '업스온일'(吏彙), '어오른일'(吏師), '어오로 일업다'(吏文), '무온일'(吏便)에서 '無乎'가 '업스온, 어오른, 무온' 등으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 9) '物'의 훈이 '갓'입은 '物 갓물(字會하 1b, 光千 17b)' 참조.

丁(아름더), 舍(무림):舍主(무림), 山(되):山枝(되갓)¹⁰⁾, 先(몬져, 아직):先亦(몬져, 先可(아직), 少(아춘):少爲(母)(아춘어미), 所(바):所(바), 率(거느리-):率良(거느리-), 收(거두-):收(거두-), 水(물):水梁(물돌)¹¹⁾, 隨(몹):隨乎(조초), 須(모로미):須只(모로미), 始(비릇):始叱(비릇), 是(이):是(이-), 新(새러):新丁(새러), 身(몸):身乎(몸소), 鑰(조쇠쇠):鑰金(조쇠쇠), 梁(돌):水梁(물돌), 易(아늑/안의):易亦(아늑허)¹²⁾, 用(쓰-):用良(쓰아), 又(또):又(또), 右(임의):右如(임의여), 云(니르-):云(니르-), 爲(ㅎ-):爲(ㅎ-), 唯(오직):唯只(오직), 有(이시-, 잇-):有(이시/잇-), 猶(오히려):猶亦(오히려), 擬(비기-):擬只(비기-), 而(마리):而亦(마리여), 耳(썩):耳亦(썩여), 因(지즐-):因乎(지즈로). 因于(지즈루), 入(들-):入(들-), 仍(지즐-):仍于(지즈루), 自(스스로):自以(스스로), 自(저):自矣(제), 作(질):作文(질문), 這:這這(굿)¹³⁾, 的(마기-):的(마기-), 除(덜-):除良(더러). 除除(良)(더더러), 曾(일즉):曾只(일즉), 持(지니-):持音(지니-), 枝(갓):草枝(풀갓), 知(알-):知想只(是)(알너기)¹⁴⁾. 知乎(알오-), 至(니르-):至

-
- 10) '山枝'는 '산지'로 읽는다면 '山'과 '枝'는 각각 음독자가 된다. '山枝'는 음독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여기서는 혼독으로 분류한다.
- 11) '水梁'은 '슈량'(略解)으로 음독할 수도 있다. 그러나 '水'와 '梁'을 각각 '물'과 '돌'로 혼독하면 '물돌(므돌)'(박희숙 1985:74)로 읽힌다.
- 12) '易亦'은 '아내여'(吏集), '아늑허'(儒必, 語錄), '안으여'(吏便), '안으허'(吏, 儒必), '안의여'(吏文), '이낙허'(羅麗), '아늑허'(吏師) 등으로 읽혀 왔다. '易'은 15세기 국어의 '수가'에 대응되는데 이두주석서에 보이는 위의 독법은 독특하여 현재로서는 완전히 해명된 바 없다.
- 13) '這這'는 '갓갓'(儒必, 語錄, 吏文, 羅麗, 吏集, 略解), '곧곧'(吏師), '굿굿'(吏便, 吏禱), '저저'(吏集) 등으로 읽고 있다. '這這'를 '곧곧, 굿굿, 갓갓' 등으로 읽는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小倉進平(1929:447)은 이를 '箇箇'의 뜻으로 풀이 하였는데 이는 후대의 혼란된 용법에 따른 잘못된 해석이다(南豐鉉·沈在箕 1976:47). 安秉禧(1987:36)에서는 '這這'가 '物物'과 같은 뜻으로 쓰이지마는 원래는 '날날이, 조목조목이'의 뜻으로 '物物'과 구별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這這'는 '굿'의 첨어를 표기한 것으로 '매우 급함'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南豐鉉·沈在箕 1976:47).
- 14) '知想只'는 '지상'(略解)으로 음독되었으나 洪淳鐸(1974:14)은 '너지'로 읽었다. '知想只'는 이를 '知'와 '想'의 복합동사 '알너지'로 혼독하거나(李丞宰 1989:122-3) '지상'으로 음독할 수 있다(朴喜淑 1985:124). 동사로 기능하는 차자들이 일부 한자어를 제외하면 거의 혼독되는 사실은 '知想只'도 혼독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의 독법은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일단 혼독의 예로 제시한다.

亦(니르-), 直(곧-):直亦(고디), 進(났-):進去(나사가-), 進叱:進叱, 此(이) 此亦中(이여히), 此樣以(이양오로), 處(곳):處(곳), 尺(자):尺文(자문), 草(풀):草枝(풀갓)¹⁵⁾, 推(밀-):推(밀-), 追(좃-):追于(조초), 他(놈):他(놈), 退(물-):退是(물어-), 便(스틱여):便亦(스틱여), 行(니-):爲行(히니-), 向(아/안):向事(아안일). 向入(앗들어). 向前(아전), 曾(일죽):曾只(일죽), 爻周(엣드러):爻周(엣드러)¹⁶⁾, 休(말-):休(말-)

2.3. 음가자

𠄎(급):良𠄎(아급), 佳(가):佳叱(갓), 可(가):-如可(다가), 簡(간):簡略亦(간략여), 去(거):去等(-거든). -去有(-거잇), 遣(교):爲遣(히교), 昆(곤):爲昆(히곤), 工(공):沙工(샤공), 果(과):-果(과), 斤(근):犯斤(近)(버근), 己(기):己只(서지), 記(기):件記(불기), 乃(나):-去乃(거나). -在乃(거나). -乃(나), 段(쑤):叱段(쑤), 德(더):德應(명), 等(-든):-去等(-거든), 冬(돌):不冬(안돌), 略(략):簡略亦(간략여), 良(아, 란):-乙良(으란), 犯(버):犯斤(近)(버근), 冬(돌):不冬(안돌), 分(분):-分(분). -叱分(쑤), 沙(사):-良沙(-아사). 沙工샤공, 徐(서):安徐(아서), 是(이):令是(-시기-). 持是(-디니-). 退是(-물리), 式(식):式(-씩), 兒(아):馬兒(마아지), 安(아):安徐(아서), 如:岐等如(가로드러). 爲等如(히트러), 亦(여):便亦(스틱여)¹⁷⁾. -亦中(여히), 臥(누):爲臥乎(히누은), 要(려):爲要(히려), 于(우):必于(비룩), 喻(디):不喻(안디), 隱(은):-隱(은), 乙(으/을, 늘):-乙良(으란). -去乙(거늘). -在乙(겨늘), 音(-오, 음):-(-良)音可(-음직). 逢音(마즘). 私音丁(아름더). 持音(지님), 應(오):德應(명), 矣(의):凡矣(물읏). 矣(-의), 丁(더):私音丁(아름더), 定(명):卜定(지명), 齊(저):-齊(-저), 之(지):之次(지츠), 只(-기, -기):-只

15) '草枝'는 '초지'로 음독할 수도 있다. 음독한다면 '草'와 '枝'는 각각 음독자가 된다.

16) '爻周'는 '쇼주'(羅麗, 吏集, 略解), '효주'(略解)로 음독되었다. 이를 語錄辨證說에서 '엣드러'로 읽은 것은 이를 동사 '에우-'(抹)와 '덜-'(除)의 복합어로 읽은 것이다(이승재 1989:88). 곧 혼독한 것이다.

17) '便亦'의 독음은 '스틱여'(吏師, 吏禱, 羅麗), '문득'(吏便, 吏文) 중 '스틱여'에 따른 것이다. 독음 '스틱여'는 '便亦'의 독법 '스틱여(羅麗), 스티여(吏便, 吏文)' 등으로 보아 '便'가 '便'과 字樣이 비슷하면서 그 독음이 '스틱여'의 첫 음절과 같은 데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안병희 1987:35).

爲(-기삼/기암), 爲良只(ㅎ약), 擬只(비기), 知(지):知想只, 叱(스):-叱段(쑤), -叱分(쑤), 次(차):之次(지츠), 置(두):-良置(-아두), 必(빌):必于(비록).

2.4. 훈가자

可(직):先可(아직)¹⁸⁾, 教(이시):-教(是)(이시), 采(금):良采(-아금), 等(돌):岐等如(가로드러), 良(아/어):良(-아), 良沙(-아서), 良置(-아두), 良采(-아금), 良中(아히), 餘良(나마), 良只(-약), 白(훈):白(-훈-), 茂(더):茂火(더블)¹⁹⁾, 臥(누):臥乎(-누온), 是(이-):是(이-), 如(다):如可(-다가), 爲(삼):-乎爲(-온삼), 矣(티):-矣(티)²⁰⁾, 以(-로):以(-로), 而(마리):而亦(마리여), 耳(쑤):耳亦(쑤너), 在(견):爲在(ㅎ견), 主(口):舍主(마름), 中(히):-亦中(-여히), 置(-두):良置(-아두), 行(니):, 向(아/안):向前(아전), 乎(오/온):-乎爲(-온삼), 乎(오/온):知乎(알온), 爲乎矣(ㅎ오티), 火(블):茂火(더블)

3. 표기법의 특징

3.1. 생략표기

直解의 이두 표기에서 드러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는 생략표기가 빈번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생략 표기는 이두 문헌에 널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直解에서 동사 ‘爲-’와 계사 ‘是-’ 그리고 어미 ‘-良, -遣, -齊’ 등의 빈번한 생략 표기가 나타나는 것은 直解에 보이는 律文의 투식적 표현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즉 直解가 한문 원문을 먼저 들

18) ‘可’가 ‘직’의 훈가자임은 ‘可 직 가’(光千 8b), ‘可 ㅎ암직 가’(類合 상 1b) 참조.

19) ‘茂火’의 ‘茂’와 ‘火’를 각각 훈가자로 보는 것은 ‘더부러(吏師), 더부러(吏便, 羅麗, 語錄), 더부러(吏文), 더블이(吏牒) 등의 독법을 고려한 것이다. ‘茂’를 ‘더’로 읽는 것은 ‘茂’가 훈 ‘덤가울-’, ‘덤거울-’(光千 22b)의 ‘더’의 훈가자이기 때문이다. 儒胥必知, 吏讀集成에서는 ‘茂火’를 ‘지복너’로 읽고 있는데 이러한 독법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訛傳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안병희 1987: 60).

20) ‘-티’를 ‘矣’의 음가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矣’의 훈가자로 보인다. 김완진(1985:14)에서 ‘티’를 ‘矣’의 古訓으로 추정한 바 있다.

고 그에 대한 번역문을 이두로 보이는 비교적 일정한 틀의 범조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가 생략되어도 문맥을 파악하는데 거의 지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빈번한 생략표기는 문맥을 파악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이두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구결에서의 생략표기와 비교된다.²¹⁾ 이러한 생략표기는 이두 중에서도 가장 생산적으로 쓰이는 이두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연히 계사 ‘是-’와 동사 ‘爲-’의 생략이 주를 이루고 있다.

3.1.1. ‘是-’의 생략

계사 ‘是-’는 동사 ‘爲-’와 더불어 빈번히 표기에서 생략된다. 이렇게 ‘是-’와 ‘爲-’가 생략되는 현상은 구결에서의 이들의 생략 현상과 대조적이다. 구결의 토 표기에서는 ‘爲-’보다는 주로 계사 ‘是-’ 쪽이 생략되었으나(남풍현 1990) 直解에서는 구결의 경우와는 달리 ‘是-’와 ‘爲-’가 수의적으로 생략되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 ㄱ. 二死謂絞斬是齊 三流謂二千里二千五百里三千里是齊(1:41a)
 ㄴ. 二等乙 減爲乎第亦中 並只 卽徒役三年齊(1:41b)
- (2) ㄱ. 凡加等罪段 杖一百流三千里爲限是乎等用良 至死罪良中 加至爲乎所不喻是齊(1:41b)
 ㄴ. 公事乙因于 犯罪爲乎矣 私情不喻齊(1:35a)
- (3) ㄱ. 在逃人乙 現捉推問次 前人是沙 爲首是如 白拷是臥乎 事是良矣(1:36b)
 ㄴ. 一人亦 被捉爲 在逃人是沙 爲首如 白拷是遣(1:36b)
- (4) ㄱ. 其人亦 答決五十是去乙 減作三十是如 爲在乙良(28:11a)
 ㄴ. 統主如 爲在乙良 隨意選擇充立爲遣(2:1b)
- (5) ㄱ. 陳損庫乙 起實庫是如 爲(5:2b)
 ㄴ. 凡公事以 所送官物囚徒牛馬如 爲在乙 差人押領遞送爲乎矣(17:6a)
- (6) ㄱ. 神仙道像及義夫節婦孝子順孫如 爲在乙(26:5a)
- (7) ㄱ. 里長色掌等矣 朦朧報狀捧上爲 實庫乙 陳損是如 爲跡(5:2b)

21) 구결에서의 記入吐의 생략에 대하여는 남풍현(1990)을 참조할 것.

- ㄴ. 重罪如 爲拏 重罪乙 輕罪如 爲在乙良(28:10b)
- (8) ㄱ. 私物是去等 減二等論爲拏(9:3a)
- ㄴ. 私物去等 本主乙 呼喚看審令是良(9:3a)
- (9) ㄱ. 萬一磨裂破毀皮封亦 不動原封爲在乙良 一道是去等 笞二十(17:2a)
- ㄴ. 又公貼乙 損壞爲在乙良 一道去等 笞四十(17:2a)
- (10) ㄱ. 騎持故失爲乎所不喻是去等(17:5a)
- ㄴ. 緣坐人亦 同居不喻去等 財産乙 沒官不冬爲齊(18:1b)
- (11) ㄱ. 凡一家內良中 死罪不喻是在 三人乙 殺害爲拏(19:3b)
- ㄴ. 一家內死罪不喻在 三人乙 殺害爲拏(1:5b)
- (12) ㄱ. 凡生謀事狀明白爲在如中 必于 一人是良置 同二人之類(1:44a)
- ㄴ. 近處軍官亦 必于 所屬不喻良置 助戰爲拏(14:2a)
- (13) ㄱ. 印信官文書及應禁兵器果 文書等亦 私家良中 本無之物是良^ㄴ 生徵難便 爲乎等用良(1:28b)
- ㄴ. 凡人例以 論爲乎不喻良^ㄴ 罵家長 絞罪良中 減二等爲乎事(21:3a)

(1-13)의 (ㄱ)은 계사 ‘是-’가 표기된 것이다. 그러나 (ㄴ)에서는 ‘是-’가 생략되었다.²²⁾ (1-2)의 (ㄱ)의 ‘-是齊’가 (ㄴ)에서는 ‘-齊’로, (3-7)의 (ㄱ)의 ‘是如’가 (ㄴ)에서는 ‘-如’로, (8-10)의 (ㄱ)의 ‘是去等’이 (ㄴ)에서는 ‘-去等’으로, (11. ㄱ)의 ‘是在’가 (11. ㄴ)에서는 ‘在’로, (12. ㄱ)의 ‘是良置’가 (12. ㄱ)에서는 ‘良置’로, (13. ㄱ)의 ‘是良^ㄴ’이 (13. ㄴ)에서는 ‘良^ㄴ’으로 표기되어 ‘是-’의 어간 ‘是’가 생략되었다.

그런데 계사 ‘是-’가 생략된 분포를 보면 ‘是-’가 모든 어미 앞에서 생략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에서와 같이 ‘-齊, -如, -去等, -在, -良置, -良’과 결합될 때에만 생략되었고 그 외의 어미 앞에서 생략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3-7)에서와 같이 ‘-是如’의 ‘是-’는 주로 ‘-是如 爲-’의 구성에서 생략되고 다음 예 (14)에서와 같이 ‘爲-’가 다른 동사와 결합되는 ‘是如 白(考)-, 是如 尊稱-, 是如 稱云-, 是如 論爲-, 是如 當言爲-, 是如 放賣-, 是如 使用爲-, 是如 妄稱爲-, 是如 虛稱-, 是如 云-’와 같은 형식에서는 (3.

22) (9-12)의 (ㄴ)에서 계사 ‘是-’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是-’가 부정사 ‘不喻’(안다)의 말음 ‘디’에 축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예들에서의 생략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생략된 것으로 다룬다.

다) 을 제외하고는 생략되지 않았다.

- (14) ㄱ. 常赦所不原是如 稱下不冬教是遣(1:18a)
- ㄴ. 爲首是如 白考是臥乎事是良采 推問爲乎矣(1:36b)
- ㄷ. 鈞旨令旨是如 尊稱爲乎事(1:42a)
- ㄹ. 期親及祖父母是如 稱云爲乎矣(1:42a)
- ㅁ. 准盜是如 論爲臥乎事段(1:43a)
- ㅂ. 免赦是如 當言爲乎庫良中(3:3b)
- ㅅ. 奴婢是如 放賣者乙良(4:5a)
- ㅇ. 妄稱奴婢是如 使用爲在乙良(4:5b)
- ㅈ. 彌勒及帝釋下降是如 妄稱爲跡(11:4a)
- ㅊ. 祖父母伯叔及叔母姊妹之喪是如 虛稱遣(12:7b)
- ㅋ. 物色是如 云彌(18:12a)

3.1.2. '爲-'의 생략

'爲-'는 '是-'에 비하여 많은 생략 현상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생략은 '爲-'가 한자 어근에 접미되어 이루어진 동사의 어간인 경우 비교적 빈번히 나타난다. '爲-'의 이러한 생략은 고려 이두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이승재 1989). 이러한 현상은 이두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일반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 (15) ㄱ. 委差官員 只只 驗實 顯跡明白爲去等 免罪 生徵安徐爲齊 生徵安徐爲齊(7:10b)
- ㄴ. 已費用爲在乙良 所犯人亦 身故爲去等 生徵安徐齊(1:25b)
- (16) ㄱ. 每三人加一等爲乎矣 一百杖爲限爲齊 (2:4b)
- ㄴ. 不造心 逢賊爲在乙良 減五等遣 並只 杖一百爲限齊(7:8b)
- (17) ㄱ. 杖六十徒一年乙 犯爲在乙 加一等爲乎第亦中 卽杖七十爲遣 徒一年半爲齊(1:40b)
- ㄴ. 杖一百徒三年乙 犯爲在乙 減一等爲乎第亦中 卽杖九十遣 徒二年半齊(1:40b)
- (18) ㄱ. 物色乙 和買爲乎矣 卽時價本許給不冬爲齊(7:9b)

- ㄴ. 自告爲乎矣 直陳不冬齊 漏落盡告不冬爲在乙良 不實不盡之罪以 與罪爲 遣(1:28a)
- (19) ㄱ. 官員書吏令史等亦 其矣 所犯事發露爲去 聞知爲遣(3:8b)
- ㄴ. 機密大事乙 聞知道 彼敵良中 漏通爲在乙良 斬齊(3:6a)
- (20) ㄱ. 一年罪乙 犯人亦 已決杖六十爲遣(1:24a)
- ㄴ. 徒流罪良 犯爲在乙良 唯只 決杖一百遣(1:19b)
- (21) ㄱ. 所隱之人置 並只 同罪以 論爲遣(4:2a)
- ㄴ. 郎廳官亦 知情不冬爲在乙良 過失以 論遣(1:14a)
- (22) ㄱ. 婦人尊長亦 必于 爲首爲良置 同犯男人乙 坐罪爲乎事(1:32a)
- ㄴ. 凡同佯犯罪爲在乙良 初亦 起揭爲在乙 爲首遣(1:32a)
- (23) ㄱ. 知不得 交易爲在乙良 勿論罪爲跡(4:5b)
- ㄴ. 賣良人罪良中 減一等爲跡 被賣之人乙良 勿論罪遣(4:5a)

‘爲’의 생략표기는 ‘是’의 경우보다 더 일반화되어 훨씬 많은 생략표기가 나타난다. 그런데 ‘是’의 경우와 같이 ‘爲-’도 모든 어미 앞에서 생략된 것은 아니어서 생략시 통합되는 어미의 제약을 보인다. 곧 (1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미 ‘-齊’와 ‘-遣’ 앞에서만 생략되고 다른 어미 앞에서는 전연 생략되지 않았다.

위(3.1.1.과 3.1.2.)에서와 같이 어미 ‘-齊’나 ‘-遣’ 앞에서 ‘是-’나 ‘爲-’가 생략된 경우 이들 앞에 연결된 선행어구가 명사(구)인가 아니면 동사(구)인가의 통사자질에 따라 생략된 어간 ‘是-’나 ‘爲-’를 추정할 수 있다. 곧 선행어구가 명사(구)이면 계사 ‘是-’, 동사(구)이면 ‘爲-’가 생략된 어간임이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3.1.3. 어미의 생략

直解의 어미 표기 중 가장 많은 생략을 보여주는 것은 ‘爲良’의 ‘爲’이다. ‘爲良’은 (24. ㄱ-ㄷ)의 세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良’이 생략된 ‘爲-’로만 표기되어 어미 ‘-良’이 표기된 ‘爲良’이 오히려 예외적이라 할 정도로 극도의 생략표기를 보여 준다.

- (24) ㄱ. 凡國家律令叱段 參酌事情輕重爲良(3:1b)

- ㄴ. 錢糧乙良 所增數以 計數爲良 虛尺文成給爲乎 例以 論齊(3:8b)
- ㄷ. 次知官吏亦 大內申聞爲良 量事乙 申聞不冬(24:2b)
- ㄹ. 量事乙 申聞不冬 虛稱奉旨爲 推問爲在乙良 斬爲乎事(24:2b)
- ㅁ. 凡父母喪及夫喪等乙 蒙白爲 嫁娶爲在乙良(6:4b)
- ㅂ. 宗親及功臣等亦 犯人乙 容隱爲 官司良中 發送 不冬 爲在乙良(1:12b)
- ㅅ. 先亦 徒三年罪乙 犯爲 立役一年已過後良中(1:21a)

(24. ㄱ-ㄷ)은 어간 ‘爲-’에 어미 ‘-良’이 통합된 ‘爲良’의 예이다. 그러나 (24. ㄹ-ㅅ)은 어미 ‘-良’이 생략되고 ‘爲-’만으로 표기된 예이다. (24. ㄱ-ㄷ)의 ‘爲良’과 같이 ‘-良’이 표기된 경우는 동사 ‘爲-’의 경우 위의 세 예에 불과하고²³⁾ 나머지 모든 예는 (24. ㄹ-ㅅ)과 같이 어미 ‘-良’이 생략되고 어간 ‘爲-’로만 표기되었다.²⁴⁾

다음도 ‘-良’이 생략표기된 예이다.

- (25) ㄱ. 於法良中 互相隱匿爲良音可 人亦 自告爲拈(1:27a)
- ㄴ. 於律良中 互相隱諱爲良音可 人果(28:6b)
- ㄷ. 一處進來對論爲良音可 人等乙良 必于 所掌外管屬不得爲在 官司是良置(28:7b)
- ㄹ. 凡獄卒亦 刀刃及可以自殺爲良音可爲 (28:4a)
- ㅁ. 常人亦 枷鎖乙 脫去爲音可爲在 他物乙 囚人亦中 許給爲是果(28:4a)
- ㅂ. 刑名事及造作等事 圓備爲音可 事乙 圓備不得爲拈(3:8b)
- ㅅ. 改正爲音可 事乙 改正不冬爲在乙良 笞四十(3:8b)
- ㅇ. 凡各納者亦 依例納官貢物及官司良中 納上爲音可 雜物色等乙(7:4a)

23) ‘爲良’(3:01b, 3:08b, 24:02b)의 예를 제외하면 除良(1:09a, 1:38a, 4:2b)을 들 수 있을 뿐이다. 이 이외에 다른 동사의 활용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24) (24. ㄹ-ㅅ) 외의 250여 개의 예는 모두 ‘爲-’로만 나타난다. 아래에 몇 예를 든다.

開座爲(01:08a), 議擬爲(01:08a), 申聞爲(01:08a), 議論爲(01:08b), 申聞爲(01:08b), 明白招服捧上爲(01:08b), 申聞爲(01:09a), 罪狀明白推問爲(01:09a), 報都評議使爲(01:09b), 論功定議爲(01:10a), 每季朔乙當爲(01:10a), 立案爲(01:10a), 罷見任爲(01:10b), 計爲(01:11a), 在貶所爲(01:11a), 依勢爲(01:12a), 容隱爲(01:12b), 程途遠近計爲(01:13a), 准爲(01:13a), 減一等爲(01:14a), 犯罪爲(01:16a), 犯罪爲(01:16a), 還俗爲(01:16a), 割出爲(01:16b), 知情爲(01:17a), 知不得爲(01:17b)

(25. ㄱ-ㄷ)은 ‘爲良音可’의 어미 ‘-良’이 표기된 예이고, (2口. 口-ㅇ)은 ‘爲良音可’의 어미 ‘-良’이 생략되고 ‘爲音可’로 나타난 예이다.

3. 1. 4. 어두자음의 생략

直解에서 어두자음이 생략되어 표기되지 않은 예로는 ‘分’과 ‘段’들이 있다. 이들은 각각 ‘叱分’과 ‘叱段’에서 ‘叱’이 생략된 것이다.²⁵⁾

(26) ㄱ. 字樣各別爲是果 及二字良中 一字叱分 觸犯爲在乙良 皆不論罪齊(3:3b)

ㄴ. 知情現告捕捉爲在乙良 家產叱分 賞給遣 不告爲在乙良 杖一百流三千里 爲乎事(18:2a)

ㄷ. 婦人矣 陰門乙 非理以 毀敗爲在乙良 唯只 本罪叱分 科斷遣 不在斷付 財產之限(20:3a)

ㄹ. 一事叱分是乃(22:5b)

ㄴ. 官司乙 陵犯爲去等 常人罪良中 加一等決罪爲乎矣 犯人矣 已身分 坐罪 爲乎事(1:12b)

ㅁ. 更良 徒三年罪乙 再犯爲在 人乙良 唯只 杖一百徒一年分 加罪爲 總計 徒罪乙 四年不過使內齊(1:21a)

ㅂ. 家長分 坐罪 不冬 爲臥乎事段 他人乙 侵損爲乎等用良 家長分 論罪爲乎 所不喻是乎條(1:32b)

ㅇ. 凡同僚官吏亦 文案良中 同著署公事乙 決斷爲乎矣 差錯分是遣 私情 無 在乙良(1:33b)

ㅅ. 凡與同罪是如 稱云段 干連人乙 唯只 正犯人矣 本罪分以 與罪爲乎矣 (1:42b)

ㅆ. 納段 報狀乙 再度捧上爲乎 形迹明白爲去等 官吏與罪 除良 里長分 與罪 爲乎事(4:2b)

(27) ㄱ. 凡國家律令叱段 參酌事情輕重爲良 定立罪名頒行天下 永爲遵守爲良爲教

25) 直解에 나타난 ‘分’과 ‘段’의 용례로는 (26. 口-ㅅ)과 (27. ㅁ-ㅅ)의 예 이외에 다음의 예가 더 있다.

分: 在逃罪分(6:9b), 紬絹布匹分(12:6b), 所減價本分(16:5b), 決罪分是齊(22:4b), 本罪分乙(25:4a)

段: 納段(1:26a), 緣故段(1:31b), 免罪不冬爲乎事段(1:36a), 凡加等罪段(1:41b), 稱云段(1:42b), 納段(4:2b), 價不減段(16:4b), 凡各期丞段(17:2a), 損二事段(20:3a), 尊屬段(20:12a)

事是去有良糸(3:1b)

- ㄴ. 遺棄小兒叱段 親生父母亦 難便棄置小兒是去有乙(4:4a)
- ㄷ. 凡錢法叱段 寶原等庫乙 設立爲 洪武通寶錢果 大中通寶及歷代銅錢等乙 用良 和會用使爲乎矣(7:2a)
- ㄹ. 他道大小軍官員亦 文字相通軍馬起送助戰 令是乎 事叱段 王旨行下 無亦 越境使內乎 所 不喻齊(14:2a)
- ㄹ. 器用錢帛等物叱段 須只 他處良中 移置爲良沙 爲盜齊(18:18b)
- ㅁ. 軍丁段 軍官及軍人矣 數外餘丁是齊(1:13a)
- ㅂ. 軍吏段 牌內入屬受料軍人亦 識字以 軍吏良中 選充爲在 人是去有亦 右人等犯罪爲去等 罪同軍人齊(1:13a)
- ㅇ. 其矣 子亦 有官職爲去等 子矣 官職以 同論爲臥乎 事段 母子亦 相絶爲乎道理 無乎事(1:15a)
- ㅅ. 遷官段 他官良中 移差是去乃 出使是去乃 隣官良中 權知是齊(1:16a)
- ㅆ. 去任段 政滿遞還是去乃 在喪是去乃 致仕等類是乎 事(1:16a)
- ㅋ. 他人矣 犯罪乙因于 干連得罪爲乎 緣故段 犯罪人乙 遲晚覺察爲 禁約不冬爲弥(1:17b)
- ㅌ. 已上罪狀段 并只 常赦不赦例良中 不在爲乎事(1:18a).

(26. ㄱ-ㄷ)은 ‘叱分’, (26. ㄹ-ㅁ)은 ‘分’의 예이고 (26. ㄱ-ㄹ)은 ‘叱段’, (2ㅅ. ㅂ-ㅌ)는 ‘段’의 예이다. 어두자음 ‘叱’의 생략에 의한 두 형태의 사용은 근대의 이두주석서에서도 널리 보이는 현상이다. 이들의 사용빈도는 위의 용례 이외에 直解에 보이는 ‘分’의 용례 ‘在逃罪分(6:9b), 紬絹布匹分(12:6b), 所減價本分(16:5b), 決罪分是齊(22:4b), 本罪分乙(25:4a)’과 ‘段’의 용례 ‘納段(1:26a), 緣故段(1:31b), 免罪不冬爲乎事段(1:36a), 凡加等罪段(1:41b), 稱云段(1:42b), 納段(4:2b), 價不減段(16:4b), 凡各駙丞段(17:2a), 損二事段(20:3a), 尊屬段(20:1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叱’이 생략되지 않은 ‘叱分’, ‘叱段’보다 ‘叱’이 생략된 ‘分’, ‘段’ 등의 표기가 우세하다.

3.1.5. 말음절의 생략

말음절이 생략된 예로는 부사 ‘凡’, 처격조사 ‘良’, ‘私丁’, ‘至’ (5:2a),

어미 ‘爲在乙良’과 ‘爲去等’ 등을 들 수 있다. 부사 ‘凡矣’에서 ‘矣’가 생략된 ‘凡’²⁶⁾과 ‘至亦’에서 ‘亦’이 생략된 ‘至’, 처격조사 ‘良中’에서 ‘良’이 생략된 ‘良’, ‘私晉丁’(6:2a)의 ‘私晉’에서 ‘晉’이 생략된 ‘私丁’, ‘爲在隱乙良’에서 ‘隱’이 생략된 ‘爲在乙良’, ‘爲去等隱’에서 ‘隱’이 생략된 ‘爲去等’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부사 ‘凡矣’에 대한 ‘凡’의 용례를 보자. ‘凡’은 원문과 번역문에서 똑같이 문두에 나타나므로 직역에 의한 한자의 사용으로 보아 이두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凡’을 이두로 보는 것은 의역인 번역문에서 ‘凡’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므로 이는 음독보다는 훈독되었을 것(안병희 1985:17)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²⁷⁾.

(28) ㄱ. 凡矣: 1:9b, 13a, 31a

ㄴ. 凡 : 1:8a, 9a, 9b, 10a, 10b, 11b, 12b, 13a, 14b, 16a,
16b, 17a, 18b, 19b, 20a, 20b, 21b, 25a, 26b,
32a, 35a, 36b, 37b, 38a, 38b(2), 39a, 39b,
39b, 40a, 42a, 42b(2), 43b, 43b, 44a(3), 45b, 47b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8. ㄱ)의 ‘凡矣’와 (28. ㄴ)의 ‘凡’의 빈도는 ‘凡矣’에 비하여 ‘凡’의 빈도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다음 (29-32)는 처격조사 ‘良中’에 대한 ‘良’의 예로 이는 말음절 ‘良’이 생략된 것이다.

(29) ㄱ. 凡同僚官吏亦 文案良中 同著署 公事乙 決斷爲乎矣(1:33b)

ㄴ. 同僚官亦 文案良 同着署爲在 五人內良中 一人亦 有私情爲在乙良
(1:34a)

(30) ㄱ. 官司乙 陵犯爲在乙良 常人罪良中 加一等爲乎矣(01:12a)

26) ‘凡’은 원문과 번역문에서 똑같이 문중에 나타나므로 직역에 의한 한자의 사용으로 보아 이두로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역인 번역문에서 ‘凡’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므로 이는 음독보다는 훈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안병희 1985:7)으로 본다.

27) 이들 용례는 너무 많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권 1의 예만을 든다.

- ㄴ. 監臨勢要之人乙良 官吏矣 合死罪良 減一等齊(26:3a)
- (31) ㄱ. 十惡反逆罪良中 干犯人果 奸淫盜賊殺人枉法受財爲在 人乙良(01:12a)
 - ㄴ. 徒流罪良 犯爲在乙良 唯只 決杖一百遣 其餘罪乙良 贖罪爲遣 存留養親爲乎事(1:19b)
- (32) ㄱ. 一罪先發爲 論罪已決後良中 餘罪亦 後發爲(01:29b)
 - ㄴ. 凡徒流人果 迂徙人果 充軍人果 囚徒人等乙 決斷後良(27:3b)

(29-32)에서 각 (ㄱ)은 ‘良中’의 예이고, (ㄴ)은 ‘良’의 예이다²⁸⁾. ‘良中’의 빈도는 ‘良’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良’은 향가와 구결에서 처격으로 쓰였다. 그러나 直解에서는 ‘良’이 단독으로 조사에 쓰인 용례는 극히 드물어 위의 4개의 용례가 보일 뿐이다. 이 이외에는 모두 ‘良中’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良’에 비하여 ‘良中’이 우세한 것은 대체로 생략되지 않은 표기에 비하여 생략표기가 우세한 경향과 대조적이다.

이들 이외에 다음과 같은 말씀생략의 예를 들 수 있다.

- (33) ㄱ. 女家亦 婚書乙 曾只 通報爲彌 私音丁 定婚爲遣(6:2a)
 - ㄴ. 官司文書印封乙 私丁 開封看審爲在乙良 杖六十爲乎矣(3:6a)
- (34) ㄱ. 節制史以 千戶百戶至亦(14:7b)
 - ㄴ. 三負以 十負至(5:2a)
- (35) ㄱ. 曾只 秋收爲 預先 捧上爲在隱乙良 不在此律齊(7:3a)
 - ㄴ. 所任官良中 行移使內良在等 遲慢失誤爲在乙良 同官乙 坐罪爲乎事(29:4a)
- (36) ㄱ. 本官亦 知情爲去等隱 罪同遣 不知者不坐罪爲乎事(23:5b)
 - ㄴ. 流徙人亦 身死爲去等 家口亦 必于 其村戶籍良中 名字施行爲良置(1:16a)

위의 (33. ㄱ)의 ‘私音丁’에서 ‘音’은 ‘私’(아마)의 말씀 ‘-口’의 첨기이고 (34)의 ‘至亦’의 ‘亦’은 ‘니르리’의 말씀 ‘이’의 표기이고, (35. ㄱ)과 (36.

28) (29-31)은 일반명사 ‘文案, 罪’에, (32)는 시간명사 ‘後’에 처격의 ‘良’이 통합된 예이다. 이들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良’은 무정명사에 통합된 예만 보이고 유정명사에 통합된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ㄱ)에서 ‘隱’은 ‘爲在’ (히견)의 발음 ‘-다’의 첨기이다. 그런데 이들이 (33-36)의 (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私丁, 至, 爲在乙良, 爲去等’으로 생략 표기되었다. 이것은 바로 발음첨기의 표기의 수의성을 보이는 것이다.

3.1.6. 조사의 생략

조사의 생략은 直解의 번역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直解의 번역은 충실한 의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두 직역에 따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의역과 직역이 혼합된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의역에서는 나타나는 격조사가 직역에서는 당연히 나타나야 할 조사가 생략되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사는 직역이나 의역이나에 따라 표기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여 생략된 경우에 이를 번역 양식의 혼란에 따른 현상으로 본다. 생략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예들이 직역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 (37) ㄱ. 上族長亦 親告爲去沙(4:9a)
 ㄴ. 父母 親告爲去等沙(4:9a)
- (38) ㄱ. 不便事乙 回避爲要(3:5a)
 ㄴ. 自己事 回避爲要(3:5b)
- (39) ㄱ. 之次罪以 論決後良中 在逃人乙(1:36b)
 ㄴ. 贓物八十貫乙 受贈後 四十貫亦(1:30a)
- (40) ㄱ. 實封以 申聞遣(1:9b)
 ㄴ. 實封 申聞爲(1:8b)

(37-40)의 (ㄱ)에서 ‘上族長亦, 不便事乙, 議決後良中, 實封以’는 각각 조사 ‘亦, 乙, 良中, 以’가 투합되었다. 그러나 (37. ㄴ)의 ‘父母’에서는 주격조사 ‘-亦’이, (38. ㄴ)의 ‘自己事’에서는 목적격조사 ‘-乙’이, (39. ㄴ)의 ‘受贈後’에서는 처격조사 ‘-良中’이 그리고 (40)의 ‘實封’에서는 조격조사 ‘-以’가 생략되었다. 이는 바로 직역과 의역이 혼합된 번역 양식의 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조사의 생략표기로 보이는 다음 예는 번역 양식에 따른 표기의 차이가 아니다.

- (41) ㄱ. 妻妾乙 并以 發送爲乎矣 父果 祖果 子孫果亦 隨去 向入在乙良(1:16b)
 ㄴ. 祖父母果 父母果 夫矣 祖父母果 父母果乙 訴告爲跡(1:5b)
 ㄷ. 祖父母果 父母果 現在爲去乙(1:5b)
 ㄹ. 親族果 故舊果 有功果 賢良果 才能果 尊貴果 國賓果 爲等如 八議良中
 應當爲在 人矣 所犯之事乙 實封 申聞爲 伏候王旨爲白乎矣(1:8b)
 ㅁ. 女婿果 孫子矣 妻果 夫矣 兄弟果 兄弟矣 妻果 有罪爲去等(1:37b)
 ㅂ. 奉王旨推問爲在 人乙良 所犯罪狀果 應議之狀乙 開座爲(1:8a)

(41. ㄱ-ㅂ)은 두 개 이상의 명사(구)를 접속한 경우의 ‘果’의 용례인데 이 때 ‘果’가 표기되지 않거나 혹은 그에 연결된 조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41. ㄱ-ㄴ)은 ‘NP果 NP果+격조사’의 구성이다. 그러나 (41. ㄷ-ㅁ)은 ‘NP果 Np果+()’의 구성으로 ‘果’ 다음에 조사가 생략된 것이며, (41. ㅂ)은 ‘NP果 Np()+격조사’의 구성으로 격조사 앞의 ‘果’가 생략된 것이다.²⁹⁾ 이와같은 표기 양상은 15세기 국어의 공동격조사 ‘과’에 일치한다.

3.2. 음의 첨기

直解에서 음이 첨기된 예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말음첨기의 예이다.

- (42) ㄱ. 令是, 斜是, 的是, 持是
 ㄴ. 先亦, 私亦
 ㄷ. 擬只, 唯只, 曾只
 ㄹ. 凡矣, 先可
 ㅁ. 私音丁, 爲去等隱, 爲在隱乙良

(42. ㄱ)의 ‘令是-, 斜是-, 的是-, 持是-’의 ‘是’는 동사 ‘시키-, 비기-,

29) 直解에 앞선 고려시대의 이두에서는 (41. ㅂ)과 같은 구성의 예(...果 ...矣, ...果 ...乙)만이 보인다(이승재 1989:110). 그런데 直解에서 생산적으로 쓰인 ‘果’가 양잠경험활요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한문에서와 같이 ‘及’을 사용하거나, ‘又’ 또는 ‘或’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연 격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단어를 나열(이철수 1989:28)하기도 하여 直解와는 다르다.

마기-, 디니-' 등의 말모음 '이'의 첨기이고, (42. ㄴ)의 '先亦, 私亦'의 '亦'은 '몬져, 아마더'의 말모음 '여'를 첨기한 것이다. (42. ㄷ)의 '擬只-, 唯只, 會只'의 '只'는 '비기-, 오직, 일즉'의 말음 '-기, -까'의 첨기이다. (42. ㄹ)의 '凡矣'의 '矣'는 '몰릿'의 말모음 '의'를 첨기한 것으로 말음 '-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先可'의 '可'는 부사 '아직'의 말음절 '직'의 첨기이다. (42. ㄹ)의 'ჰ'은 '아롬더'의 '아롬'의 말음 '롬'을, '爲去等隱'의 '隱'은 '흐거든'의 말음 'ㄴ'을 그리고 '爲在隱乙良'의 '隱'은 '흐건은을랑'의 '견'의 말음 'ㄴ'을 첨기한 것이다.

3.3. 차자의 전용

차자는 시대와 사용자에 따라 용자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차자표기에 차용되는 한자는 이두의 기능상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고정된다. 그 결과 하나의 차자가 하나의 형태 표기에 차용되기도 하지만, 차자에 따라서는 여러 형태의 표기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 차자의 전용이라 한다면 이와같이 차자가 전용될 때 그에 따라 자연히 그 차자의 용자법이 달라진다. 이와같이 하나의 차자가 여러 형태의 표기에 전용되는 용자법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43) ㄱ. 納上爲音可 雜物色等乙 隱置斜用爲跡(7:4a)

ㄴ. 夫婦亦中 先可 子細 憑問爲乎矣(20:11a)

ㄷ. 大醫亦 官藥乙 逢受 軍士良中 進使內如可 親進不冬(14:5b)

(43)는 차자 '可'의 예이다. (43. 1)의 '-音可'에서 '可'는 어미 '-암/엄 직'의 '직'에 해당하는 훈독자이고 (43. 2)의 '先可'에서는 부사 '아직'의 '직'의 말음첨기로 훈가자이다. 그러나 (43. 3)의 '如可'에서는 어미 '-다가'의 말음절 '가'를 표기한 음가자이다.

(44) ㄱ. 死罪乙良 唯只 照律爲乎矣 當死如 申聞爲白遣(1:8a)

ㄴ. 在逃人是沙 爲首是如 白傍是遣(1: 36b)

(44)는 차자 ‘白’의 예이다. ‘白’은 동사 ‘皤-’의 차자로 주로 겸양의 선언어말어미 ‘-습-’의 훈가자로 차용된다. (44. 1)의 ‘-爲白遭(ㅎ습고)’가 그 예이다. 그러나 ‘白’은 훈가자 이외에 (44. 2)의 ‘白(拷)’에서와 같이 훈독자로 차용되기도 한다. ‘白’이 명사 ‘皤다담’의 두음절 ‘皤’의 훈독자로 쓰인 예이다.

- (45) ㄱ. 右如 爲在 罪犯乙良 竝只 累次以 減等 科罪爲乎事(1:14b)
- ㄴ. 自量自概 平爲樣以 納上 數准上下爲乎矣 官式貌如(7:3b)
- ㄷ. 招人爲有如 外人乙良 凡盜爲從例乙用良 杖七十爲乎事(1:33a)
- ㄹ. 國大妃殿妃子殿隱 懿旨是如 尊稱爲白遭(1:42a)
- ㅁ. 大醫亦 官藥乙 逢受 軍士良中 進使內如可 親進不冬(14:5b)
- ㅂ. 價本亦 一十貫是在如中 二十貫亦 減少爲在(16:4b)

(45)는 차자 ‘如’의 예이다. ‘如’는 형태에 따라 몇 가지 다른 독법을 보인다. (45. ㄱ)의 ‘右如’의 ‘如’는 부사 ‘임의여’의 접사 ‘-여’의 음독자이고 (45. ㄴ)의 ‘貌如’의 ‘如’는 ‘쫓다이§’의 ‘다이’의 훈독자로 차용된 것이다. 그러나 (45. ㄷ-ㅁ)에서 ‘如’는 훈가자로 차용되고 있다. (45. ㄷ)의 ‘爲有如’에서는 시상선어말어미 ‘-더’³⁰⁾, (45. ㄹ)의 ‘-是如’에서는 어말어미 ‘-다’, (45. ㅁ)의 ‘如可’에서는 어미 ‘-다가’의 ‘다’의 훈가자로 차용되고 있다. 한편 (45. ㅂ)의 ‘是在如中’에서는 어미 ‘-이견여히’의 ‘여’의 음가자로 쓰인 것이다.

- (46) ㄱ. 親族故交亦中 自請 不冬爲是果(28:6a)
- ㄴ. 總麻同姓八寸已上親屬乙 殺害爲乎爲 作謀爲姊 放賣爲姊(1:5b)
- ㄷ. 社稷乙 危亡爲只爲 作謀爲行臥乎事(1:4a)
- ㄹ. 尊貴果 國賓果 爲等如 八議良中 應當爲在 人矣(1:8b)

(46)는 차자 ‘爲-’의 예이다. ‘爲’는 동사 ‘ㅎ-’의 훈독자 또는 ‘삼/암’의

30) 뒤에 명사류가 올 때 동명사어미 ‘-ㄴ’이 ‘乎(-은)’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실현되지 만 ‘如’의 경우는 어미 ‘-ㄴ’에 해당되는 차자가 표기되지 않는다. ‘-如+명사류’의 구성을 고려하여 ‘-던’으로 읽는다. 따라서 ‘-ㄴ’까지를 포괄한 표기로 본다.

훈가자로 차용되었다. (46. ㄱ)의 ‘爲是-’는 동사 ‘ㅎ-’의 어간 표기에 쓰인 훈독자이고, (46. ㄴ-ㄷ)의 ‘爲乎爲’와 ‘爲只爲’의 ‘-爲’는 동명사어미 ‘只’와 ‘乎’ 다음에 통합되어 ‘ㅎ은삼’, ‘ㅎ기암’으로 읽혀 ‘-하려고, -하기위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의 말음절 ‘삼/암’의 표기에 차용된 훈가자이다.

- (47) ㄱ. 離異改正者隱 必于 逢音 宥旨有良置 猶亦 離異改正令是齊(6:10a)
 ㄴ. 識字以 軍吏良中 選充爲在人是去有亦右人等犯罪爲去等(1:13a)
 ㄷ. 隱漏爲有如乎 人口財物乙良 并只 入官遣(7:13a)

(47)은 ‘有’의 예이다. ‘有’는 동사 ‘이시-’나 선어말어미 ‘-잇-’의 표기에 차용되었다. (47. ㄱ)의 ‘爲良置’에서 ‘有’는 동사 ‘이시-’의 훈독자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47. ㄴ-ㄷ)의 ‘去有’와 ‘爲有如乎’에서는 다같이 선어말어미 ‘-잇-’의 차자로 차용된 훈가자이다.

- (48) ㄱ. 祖父母及父母果 夫矣 祖父母及父母等乙 打傷爲誅 謀殺爲誅(1:4b)
 ㄴ. 右人矣 妻眷乙 依例口糧題給資生終身令是矣(2:3a)
 ㄷ. 凡矣 軍官軍人亦 犯罪爲去等(1:13a)

(48)은 ‘矣’의 예이다. ‘矣’는 주로 속격조사 ‘-의’나 어미 ‘-되’의 차자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사 ‘물읷’의 말음표기에도 차용되었다. (48. ㄱ)의 ‘夫矣’에서 ‘-矣’는 속격조사 ‘-의’의 차자로 음독자이고, (48. ㄴ)의 ‘令是矣’의 ‘-矣’는 어미 ‘-따’의 차자로 훈가자이다. 그러나 (48. ㄷ)의 ‘凡矣’의 ‘矣’는 이들과는 달리 부사 ‘물읷’의 말음 ‘읷’의 차자로 차용된 음가자이다.

- (49) ㄱ. 官司亦 差人錢糧生徵令是誅 公事乙 擬只彌(18:7b)
 ㄴ. 九十是去等 降職四等 并只 罷見任爲乎矣(1:10b)
 ㄷ. 軍官矣 不公不法等乙 須只 精密亦 實封以 申聞遣(1:9b) (부사)
 ㄹ. 故只 他矣 防築貯水乙 決流爲在乙良(30:1b)
 ㅁ. 死罪乙良 唯只 照律爲乎矣 當死如 申聞爲白遣(1:8b)
 ㅂ. 曾只 在逃爲有如 人乙良 必于 行路限日亦 未滿爲良置(1:19a)
 ㅅ. 兩邊ㄷ只 仔細相知良只 各從所願以 婚書相送 依例結族爲乎矣(6:2a)

- . 社稷乙 危亡爲只爲 作謀爲行臥乎事(1:4a)
- 스. 行路日數亦 限日已過己只 未到爲在乙良 不許放赦齊(1:18b)
- 스. 價本乙 計數爲乎矣 數戈只 杖七十徒一年半罪良中 重爲跡(16:4a)
- ㄱ. 被告令是在 平人乙 無緣故 延留三日巴只 放還不冬爲在乙良 筭二

(49)은 ‘只’의 예이다. ‘只’는 주로 말음첨기 표기에 쓰였고 그 외에 동명사어미 ‘-기’나 보조조사 ‘-가지’의 ‘가’의 음가자로 쓰였다. (49. ㄱ)의 ‘擬只’에서 ‘只’는 ‘비기-’의 말음 ‘기’의 첨기이고, (49. ㄴ)의 ‘并只’에서는 부사 ‘다만기’의 말음첨기이다. (49. ㄷ)의 ‘須只’의 ‘只’는 ‘모로미’의 말음 ‘이’의 첨기이고 (48. ㄹ-ㅂ)의 ‘故只, 唯只, 曾只’와 (49. ㄷ)의 ‘爲良只’의 ‘只’는 부사 ‘짐즉, 오직, 일즉’과 강세의 어미 ‘-악/억’의 ‘-ㄱ’ 말음첨기에 쓰인 음가자이다. 한편 (49. ㄹ)의 ‘爲只爲’의 ‘只’는 ‘헉기암’의 동명사어미 ‘기’의 음가자이다. 그리고 (49. ㅅ)의 ‘己只’에서는 보조조사 ‘ㅅ지’의 말음 ‘지’의 음가자이다.

- (50) ㄱ. 各司亦 進來推問次良中(1:12b)
- ㄴ. 依例俸祿乙 次第未到爲去乙 預給爲在乙良(7:9b)
- ㄷ. 次知 凡矣 公事乙 次知使內乎矣 其中雜色掌以乎樣以 妄稱爲跡(4:7a)

(50)은 ‘次’의 예이다. ‘次’는 (50. ㄱ)의 ‘次(츠)’와 (49. ㄴ)의 ‘次第(츠데)’와 같이 ‘츠’로 음독하거나 (50. ㄷ)의 ‘次知(기슴알이)’와 같이 ‘기슴’으로 훈독된다.

〈참고문헌〉

강성일(1966), 대명률직해 이두 색인, 국어국문학 31.
 고정의(1987),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고정의(1992), 대명률직해 이두 색인, 울산어문논집 8, 울산대 국어국문학
 과.

- 김완진(1985), 특이한 음독자 및 훈독자에 대한 연구, 동양학 15.
- 김태균(1968), 대명률직해 이두 주해, 경기 3, 경기대.
- 김태균(1971a), 대명률직해 이두의 형태분류, 경기대논문집.
- 김태균(1971b), 대명률직해에 있어서의 시제연구, 문교부 1971-6.
- 김태균(1972), 대명률직해에 있어서의 '在'의 용법, 경기 6, 경기대논문집.
- 남풍현(1975a), 한자차용표기법의 발달, 국문학논집 7.8합집, 단국대국문과.
- 남풍현(1981b), 차자표기법연구, 학술논총 6, 단국대출판부.
- 남풍현(1990a), 고려말·조선초기의 구결 연구, 진단학보 69, 진단학회.
- 박성중(1987), 대명률직해의 '旨是絃無亦'과 '旨是絃以'에 대하여, 국어학 12.
- 박희숙(1985),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 배대은(1984), 조선조초기의 이두조사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 배대은(1988), 이두 부사 어휘고, 배달말 13, 배달말학회.
- 배대은(1989), 이두 명사 어휘고, 배달말 14, 배달말학회.
- 서종학(1991), 이두의 문법형태 표기에 관한 역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안병희(1985), 대명률직해 이두의 연구, 규장각 9.
- 이승재(1989), 고려시대 이두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철수(1983), 양잠경험활요의 이두연구, 인하대출판부.
- 홍순탁(1974), 이두연구, 광문출판사.